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01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이용우 · 김민석 · 김원이
문진석 · 전은수 · 이해식
황명선 · 김태선 · 김승원
김용만 · 서미화 · 박 정
허 영 · 김준혁 · 채현일
조계원 · 박균택 · 염태영
박선원 · 신정훈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그 직무나 국회의 시설 또는 국회의원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날

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국회의 시설이나 국회의원의 직위·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간담회·공청회·집회 등을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와 국회의 자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징계제도는 제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주로 일정 기간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출석정지에 그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징계수단이 없어 징계의 정도를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국회의원의 직무·시설 또는 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간담회·공청회·집회 또는 그 밖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이에 국회의원의 명의를 제공한 때 제1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직무수행정지 기간 동안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행위, 의안을 발의하거나 그 발의에 찬성하는 행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국회의원으로서 법

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2. 제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56조에 따라 징계안이 제출되어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설></u>	1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국회의원의 직무·시설 또는 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간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 ② (생략)

<신설>

담회·공청회·집회 또는 그 밖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이에 국회의원의 명의를 제공한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직무수행정지 기간 동안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행위, 의안을 발의하거나 그 발의에 찬성하는 행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u>③</u> ~ <u>⑤</u> (생략)	<u>2. 제명</u> <u>④</u> ~ <u>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